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20
----------	------

발의연월일 : 2017. 1. 2.
발의자 : 이현승 · 정태옥 · 채이배
정갑윤 · 윤상현 · 김도읍
이은권 · 박맹우 · 박명재
김종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 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무능력자등기부를 제한능력자등기부로 변경하고, 제한능력자등기의 등기사항 중 ‘한정치산자인 뜻’을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실’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상업등기법 일부개정 법률안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한능력자등기부

제25조제3항제5호 중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한다.

제4장제3절의 제목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를 “제한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무능력자등기의 등기사항 등)”을 “(제한능력자등기의 등기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한정치산자인 뜻”을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무능력자등기의 신청인)”을 “(제한능력자등기의 신청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를 “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영업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변경으로 인한 소멸·변경의 등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중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한다.

제49조제2항 본문 중 “무능력자”를 각각 “제한능력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

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

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등기기록”이란 하나의 회사 · 합자조합 · 상호, 한 사람의 <u>무능력자</u> · 법정대리인 · 지배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제한능력자</u> ----- ----- -----.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 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 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u>2. 무능력자등기부</u> 3. ~ 11.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 ----- -----. 1. (현행과 같음) <u>2. 제한능력자등기부</u> 3. ~ 11.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인감의 제출)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5. 제47조제2항 · 제3항에 따른 <u>무능력자의 등기</u>	제25조(인감의 제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4. (현행과 같음) 5. ----- <u>제한능력자</u> -----

<p>6. ~ 8. (생 략)</p> <p>제3절 <u>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u></p>	<p>6. ~ 8. (현행과 같음)</p> <p>제3절 <u>제한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u></p>
<p>제46조(<u>무능력자등기의 등기사항 등</u>) ① 「상법」 제6조에 따른 <u>무능력자의</u>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p>	<p>제46조(<u>제한능력자등기의 등기사항 등</u>) ① ----- <u>제한능력자</u>----- ----- -----.</p>
<p>1. 미성년자 또는 <u>한정치산자인 뜻</u></p> <p>2. <u>무능력자의</u> 성명 ·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p> <p>3. · 4. (생 략)</p> <p>② (생 략)</p>	<p>1. -----<u>피한정후견인</u>이라는 사실</p> <p>2. <u>제한능력자</u>----- -----</p> <p>3.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7조(<u>무능력자등기의 신청인</u>)</p> <p>① <u>무능력자의</u> 등기는 그 <u>무능력자가</u> 신청한다.</p> <p>② <u>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u> 등기 또는 <u>영업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u>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p>	<p>제47조(<u>제한능력자등기의 신청인</u>)</p> <p>① <u>제한능력자</u>-----<u>제한능력자</u>-----.</p> <p>② <u>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u> 등기, <u>영업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u> 등기 또는 <u>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변경으로 인한 소멸 · 변경의</u> 등기----- -----.</p>
<p>③ <u>무능력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u>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p>	<p>③ <u>제한능력자</u>----- -----</p>

<p>청한다.</p> <p>④ (생 략)</p> <p>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u>무능력자의 성명 ·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u> 3. · 4. (생 략) <p>② (생 략)</p> <p>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 략) ② <u>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무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다.</u>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p>③ · ④ (생 략)</p>	<p>-----.</p> <p>④ (현행과 같음)</p> <p>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제한능력자</u>----- ----- 3. · 4. (현행과 같음) <p>② (현행과 같음)</p> <p>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한능력자</u>----- -----<u>제한능력자</u> -----. ----- ----- ----- -----. <p>③ · ④ (현행과 같음)</p>
---	---